

보도자료

2010년 4월 7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과장(2330) 나.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영미과장(2430)
[보고안건]
가. 시청자권익증진과 양한열과장(2690)

2010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시 확정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7조에 따라, 아날로그TV 방송 종료일시를 심의하여 의결함
- 대한민국 전역의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일은 '12. 12. 31(월) 오전 4시로 정하고
-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콜센터 운영, 기술지원 등 시청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

나. 방송법상 1인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

- 방송법 제8조제2항(1인 소유제한)을 위반하여 (주)경인방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피심인(정○○)에 대해 방송법 제8조제13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심의하여
- 피심인에게 소유주식의 의결권 회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함

[보고안건]

가. 「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(안)」에 관한 사항
(첨부자료 참조)

-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,
- 시청자위원회 구성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「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(안)」을 마련하여 보고함

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(안)

1. 위원 위촉 절차

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, 위원 적격여부 심사, 0배수 후보자 선정,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.

(1) 후보자 공모

-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,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.
-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(지원서, 추천단체 추천서), 접수방법, 모집인원, 모집기간, 위촉절차, 위원 결격사유,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(2) 위원 적격여부 심사

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.

(3) 후보자 선정

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전문성, 연령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, 추천분야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.

(4) 위원 선정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한다.
-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 범위 및 역할 등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
- ③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2. 후보자 추천 및 위원 결격 사유

(1) 후보자 추천

- ①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조의 시청자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결과,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(2) 위원 결격 사유

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- i.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- ii.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(교육 공무원, 법관 제외)
- iii. 정당법에 의한 당원
- iv.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3. 위원 임기 및 연임

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4. 기타

해당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, 본 권고(안)의 내용에 준하여 내규를 제정하고,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 내규 제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 수 제한, 위원 임기, 연임 제한 등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또는 전문편성 채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.